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1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맹성규·한민수·윤종군

황명선 • 이기헌 • 황운하

복기왕 · 손명수 · 이연희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 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 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의12"를 "제47조의13"으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으로 한다.

제47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동차의 교환 · 환불중재
- 1의2. 제47조의13에 따른 분쟁조정

제47조의7제2항제3호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를 "다음 각 목의 규정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나. 교환 · 환불중재에 관한 규정
- 다. 교환 · 환불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47조의8제7항 본문 중 "회의록은"을 "회의록 및 제47조의13에 따른 조정부의 회의록은"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4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①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 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 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③ 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자동 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서면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 ⑤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⑦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 ⑧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중재절차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 ⑨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3항 · 제5항, 제47조의9(제2

항은 제외한다),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는 "조정"으로, "중재부"는 "조정부"로,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중재절차"는 "조정절차"로,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분쟁조정 결정"으로 본다.

①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1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을 신 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5조(등록)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u>제47</u>	<u>제47</u>
<u>조의12</u>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u> 조의13</u>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	
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	
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	
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	
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u>
제5장의2 <u>자동차의 교환 또는</u>	제5장의2 <u>자동차의 교환 또는</u>
<u>환불</u>	<u>환불 등</u>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②
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항	
<u>가. 교환・환불중재</u>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u><신 설></u>	1의2. 제47조의13에 따른 분쟁

- 2. (생략)
- 3. <u>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u>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 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생 략)

조정
 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 규정</u>
<u>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u>
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u>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u>
<u>규정</u>
다. 교환・환불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③ (현행과 같음)
세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ই</u>
의록 및 제47조의13에 따른 조
정부의 회의록은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① 하자차량소유 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47 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가 서면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 로 지명한다.
 - ⑤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

- 위원회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 립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⑧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 은 중재절차에서 원용(援用)하 지 못한다.
- ⑨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4 7조의4제3항·제5항, 제47조의9 (제2항은 제외한다), 제47조의1 0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중재"는 "조정"으로, "중재부"는 "조정부"로,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중재절차"는 "조정절차"로, "교 환·환불중재 신청"은 "분쟁조 정 신청"으로,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분쟁조정 결정"으로 본다.
- ⑩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
<u>을</u> 준용한다 <u>.</u>